

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정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2012년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래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.

○ 그러나 2020년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, 사업당 평균 주민자원 가치환산 총액은 보조금의 2.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습니다.

○ 이에 서울시가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시키고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효성을

제고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주민자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원의 발굴과 활용 등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